|  |  |  |
| --- | --- | --- |
| **특종작업 인원 안전기술 교육 및 검정 관리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령 제30호  《특종작업 인원 안전기술 교육 및 검정 관리규정》을 2010년 4월 26일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였기에 이에 공포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7월 12일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반포한 《특종작업 인원 안전기술 교육 및 검정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국장 駱琳  2010년 5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과 검정 업무를 규율하고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사상 사고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하여 《안전생산법》, 《행정허가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생산경영단위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재심사 및 감독 관리업무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특종작업 인원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이 규정이 지칭하는 특종작업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오퍼레이터 본인, 타인의 안전과 건강 및 설비,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을 가리킨다. 특종작업의 범위는 특종작업 목록이 규정한다.    이 규정이 지칭하는 특종작업 인원이란 특종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제4조 특종작업 인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이고 국가의 법정 퇴직연한에 미달한 자    (2) 지역사회 또는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에 합격되고 아울러 상응하는 특종작업 근무에 방해를 주는 기질성 심장병, 간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어지럼증, 히스테리, 파킨슨병, 정신병, 치매증, 그리고 기타 질병과 생리결함이 없는 자    (3) 초등 및 그 이상의 문화정도를 구비한 자    (4) 필요한 안전기술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자    (5) 상응하는 특종작업이 규정한 기타 요건.    위험 화학품의 특종작업 인원은 전 항 제(1)호, 제(2)호, 제(4)호와 제(5)호가 규정한 요건 이외에 고등학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화정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 특종작업 인원은 전문적인 안전기술 교육과 검정에 합격되고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작업 면허증》(이하 특종작업 면허증이라 함)을 취득한 후에야 그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조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재심사 업무는 통일적인 감독관리, 급별 추진, 교육과 검정의 분리 원칙을 실시한다.    제7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하 안전감독관리총국이라 함)은 전국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및 재심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및 재심사 업무를 처리한다.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이하 탄광안전감찰국이라 함)은 전국의 탄광 특종작업 인원(탄광 광정에 사용되는 특종설비 작업인원 포함)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및 재심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탄광 특종작업 인원의 면허증발급 업무를 감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는 본 행정구역의 탄광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재심사 업무를 처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 특종작업 인원의 면허증 발급업무를 감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이하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이라 함)는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 특종작업 인원의 검정 및 면허증 발급업무를 감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는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및 재심사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누구든지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또는 재심사 업무 중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모두 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찰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 특종작업 인원의 검정 및 면허증 발급업무를 감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에 고발할 수 있다.  제2장 교 육    제9조 특종작업 인원은 그가 종사하는 특종작업에 필요한 안전기술 이론교육과 실제 작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미 직업고중, 기능학교 및 중등 전문학교 이상 학력을 취득한 졸업생이 그가 배운 전공에 어울리는 특종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학력증서를 제시하여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상응한 전공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서 특종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호적 소재지 또는 근무 소재지에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교육에 종사하는 기구(이하 교육기구라 함)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교육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다.    교육기구가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을 실시 시에는 상응하는 교육계획, 수업안배를 제정하여 유관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교육기구는 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찰국이 제정한 특종작업 인원 교육요강과 탄광 특종작업 인원 교육요강에 따라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정 및 면허증발급    제12조 특종작업 인원의 검정에는 시험과 심사 2개 부분이 포함된다. 시험은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가 담당하고 심사는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이 담당한다.    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찰국은 각각 특종작업 인원, 탄광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검정표준을 제정하고 상응하는 시험 문제뱅크를 구축한다.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는 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찰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검정표준에 따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제13조 특종작업 인원 자격시험에 참가하는 자는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사용단위는 학력증서나 교육기구의 교육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인의 호적 소재지 또는 근무 소재지의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에 신청하여야 한다.    검정 및 증서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는 신청을 받은 후 60일 내에 시험을 조직하여야 한다.    특종작업 자격시험에는 안전기술 이론시험과 실제작업 시험 2개 부분이 포함된다. 시험에 불합격인 경우 1차 보충 시험을 허락하며, 보충 시험을 거쳐 그래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상응하는 안전기술 교육에 다시 참가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의 위임을 받고 특종작업 자격시험을 감당하는 수임단위는 필요한 장소, 시설, 설비 등 조건을 갖추고 상응하는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요금기준 등 정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특종작업 자격시험 수임단위는 시험이 끝난 후 10일 근무일 이내에 시험성적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시험에 합격된 특종작업 인원은 그 호적 소재지 또는 근무 소재지의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에 특종작업 면허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분증 사본, 학력증서 사본, 건강검진서, 시험 합격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청을 수리한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5일 근무일 이내에 특종작업 인원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 완료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장에서 수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당장에서 수리하기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장에서 또는 5일 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1회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이미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20일 근무일 이내에 이미 수리한 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특종작업 면허증을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 특종작업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특종작업 면허증의 양식과 기준, 번호는 안전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0조 특종작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심사 동의 후 보완 발급한다.    특종작업 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심사 확인 후 교체 발급하거나 업데이트를 한다.  제4장 재심사    제21조 특종작업 면허증은 매 3년에 1회 재심사를 실시한다.    특종작업 인원이 특종작업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 연속 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안전생산 관련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 경우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근무 소재지의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작업 면허증 재심사 기간을 매 6년에 1회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특종작업 면허증을 재심사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사용단위는 기간만료 전 60일 이내에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근무 소재지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또는 현급 이상 의료기구가 제시한 건강검진서    (2) 특종작업에 종사한 상황    (3) 안전교육 시험 합격기록.    특종작업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증 연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23조 특종작업 면허증 재심사 또는 연기 재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특종작업 인원은 필요한 안전교육에 참가하고 그 시험에 합격되어야 한다.    안전교육은 최저 8개 수업시간이 필요하며, 주로 법률, 법규, 표준, 사고사례 및 관련 신공학, 신기술, 신장비 등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24조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심사에 합격된 경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날인, 등록하여 확인하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연기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재심사에 합격되면 특종작업 면허증을 다시 발급한다.    제25조 특종작업 인원이 아래와 같은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연기 재심사에 통과될 수 없다.    (1) 건강검진에 불합격인 경우    (2) 규칙위반 작업으로 인해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거나 2회 이상의 규칙위반 행위가 있는 동시에 조사를 거쳐 사실임이 확인된 경우    (3) 안전생산 불법행위가 있는 동시에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안전생산 감독 및 감찰부서의 감독검사를 거절하거나 저애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시험에 불합격인 경우    (6) 이 규정 제30조, 제31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제26조 특종작업 면허증의 재심사 또는 연기 재심사가 이 규정 제25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거쳐 시험에 합격된 후에야 재심사 또는 연기 재심사 수속을 처리한다.    재심사, 연기 재심사에 여전히 불합격이거나 규정한 기간 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특종작업 면허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7조 신청인이 재심사 또는 연기 재심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관리    제28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와 업무직원은 업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고 청렴하여야 하며,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특종작업 인원의 검정, 면허증발급, 재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그에게 이 규정 제30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종작업 면허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해야 하는 안전생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 및 그 특종작업 인원에게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실시한다.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특종작업 인원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단위와 사회공중의 조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종작업 인원의 면허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아래와 같은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특종작업 면허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특종작업 면허증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연기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특종작업 인원의 건강상태가 특종작업에 계속 종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생한 안전생산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4) 특종작업 면허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5) 사기, 회뢰 등 부당수단으로 특종작업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특종작업 인원이 전 항 제(5)호, 제(5)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특종작업 면허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31조 아래와 같은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특종작업 면허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특종자격 인원이 사망한 경우    (2) 특종작업 인원이 말소신청을 제출한 경우    (3) 특종작업 면허증이 법에 의해 취소된 경우.    제32조 특종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지 6개월 이상인 특종작업 인원은 실제 조종시험을 다시 치르고 시험에 합격되어야 근무할 수 있다.    제3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 특종작업 인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을 담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는 해마다 각각 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찰국에 특종작업 인원의 검정 및 면허증발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육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을 조직 실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구나 개인에게 안전생산 교육면허증을 전대, 대여하지 못한다.    제35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교육, 재심사 보존서류를 건립 및 건전히 함으로써 신청, 교육, 검정, 재심사 조직업무와 일상적인 검사업무를 열심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 특종작업 인원이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무단위를 변경하는 경우 원 근무단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특종작업 면허증을 압류하지 못한다.    본 성, 자치구, 직할시 관할범위를 벗어나서 특종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근무 소재지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37조 생산경영단위는 특종작업 면허증을 인쇄, 위조, 전매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특종작업 면허증을 인쇄, 위조, 전매하지 못한다.  특종작업 인원은 특종작업 면허증을 위조, 개찬, 전대, 양도, 도용하거나 위조한 특종작업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 칙    제38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와 업무직원이 특종작업 인원 검정, 면허증발급 또는 재심사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9조 생산경영단위가 특종작업 인원의 인적 보존서류를 구축 및 건전히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생산경영단위가 특종작업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특종작업 인원을 채용하여 특종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정돈을 명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탄광기업이 특종작업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특종작업 인원을 채용하여 특종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탄광 생산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1조 생산경영단위가 특종작업 면허증을 불법 인쇄, 위조, 전매하거나 불법 인쇄, 위조, 전매한 특종작업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2조 특종작업 인원이 특종작업 면허증을 위조, 개찬하거나 또는 위조한 특종작업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1,000만 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종작업 인원이 특종작업 면허증을 전대, 양도, 도용한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교육기관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특종작업 인원 안전기술 교육에 종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행정적 처벌을 가한다.  제7장 부 칙    제44조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교육, 시험 요금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탄광 특종작업 인원 검정 및 면허증 발급업무를 담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가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물가, 재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면허증 제작비용은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의 동급 재정예산에서 지출한다.    제4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 특종작업 인원 검정 및 면허증 발급업무를 담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는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안전생산총국, 탄광안전감찰국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7월 12일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반포한 《특종작업 인원 안전기술 교육 및 검정 관리방법》(원 國家經貿委 령 제13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첨부문건: 특종작업 목록(생략) |  |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  **管理规定**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令第30号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规定》已经2010年4月26日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局长办公会议审议通过，现予以公布，自2010年7月1日起施行。1999年7月12日原国家经济贸易委员会发布的《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同时废止。  局长 骆琳  二○一○年五月二十四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考核工作，提高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水平，防止和减少伤亡事故，根据《安全生产法》、《行政许可法》等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生产经营单位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考核、发证、复审及其监督管理工作，适用本规定。  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对有关特种作业人员管理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三条** 本规定所称特种作业，是指容易发生事故，对操作者本人、他人的安全健康及设备、设施的安全可能造成重大危害的作业。特种作业的范围由特种作业目录规定。  本规定所称特种作业人员，是指直接从事特种作业的从业人员。  **第四条** 特种作业人员应当符合下列条件：  （一）年满18周岁，且不超过国家法定退休年龄；  （二）经社区或者县级以上医疗机构体检健康合格，并无妨碍从事相应特种作业的器质性心脏病、癫痫病、美尼尔氏症、眩晕症、癔病、震颤麻痹症、精神病、痴呆症以及其他疾病和生理缺陷；  （三）具有初中及以上文化程度；  （四）具备必要的安全技术知识与技能；  （五）相应特种作业规定的其他条件。  危险化学品特种作业人员除符合前款第（一）项、第（二）项、第（四）项和第（五）项规定的条件外，应当具备高中或者相当于高中及以上文化程度。  **第五条** 特种作业人员必须经专门的安全技术培训并考核合格，取得《中华人民共和国特种作业操作证》（以下简称特种作业操作证）后，方可上岗作业。  **第六条** 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考核、发证、复审工作实行统一监管、分级实施、教考分离的原则。  **第七条**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以下简称安全监管总局）指导、监督全国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考核、发证、复审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考核、发证、复审工作。  国家煤矿安全监察局（以下简称煤矿安监局）指导、监督全国煤矿特种作业人员（含煤矿矿井使用的特种设备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考核、发证、复审工作；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煤矿特种作业人员考核发证工作的部门或者指定的机构负责本行政区域煤矿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考核、发证、复审工作。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责煤矿特种作业人员考核发证工作的部门或者指定的机构（以下统称考核发证机关）可以委托设区的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责煤矿特种作业人员考核发证工作的部门或者指定的机构实施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考核、发证、复审工作。  **第八条** 对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发证、复审工作中的违法行为，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向安全监管总局、煤矿安监局和省、自治区、直辖市及设区的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煤矿特种作业人员考核发证工作的部门或者指定的机构举报。  **第二章 培 训**  **第九条** 特种作业人员应当接受与其所从事的特种作业相应的安全技术理论培训和实际操作培训。  已经取得职业高中、技工学校及中专以上学历的毕业生从事与其所学专业相应的特种作业，持学历证明经考核发证机关同意，可以免予相关专业的培训。  跨省、自治区、直辖市从业的特种作业人员，可以在户籍所在地或者从业所在地参加培训。  **第十条** 从事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的机构（以下统称培训机构），必须按照有关规定取得安全生产培训资质证书后，方可从事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  培训机构开展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应当制定相应的培训计划、教学安排，并报有关考核发证机关审查、备案。  **第十一条** 培训机构应当按照安全监管总局、煤矿安监局制定的特种作业人员培训大纲和煤矿特种作业人员培训大纲进行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  **第三章 考核发证**  **第十二条** 特种作业人员的考核包括考试和审核两部分。考试由考核发证机关或其委托的单位负责；审核由考核发证机关负责。  安全监管总局、煤矿安监局分别制定特种作业人员、煤矿特种作业人员的考核标准，并建立相应的考试题库。  考核发证机关或其委托的单位应当按照安全监管总局、煤矿安监局统一制定的考核标准进行考核。  **第十三条** 参加特种作业操作资格考试的人员，应当填写考试申请表，由申请人或者申请人的用人单位持学历证明或者培训机构出具的培训证明向申请人户籍所在地或者从业所在地的考核发证机关或其委托的单位提出申请。  考核发证机关或其委托的单位收到申请后，应当在60日内组织考试。  特种作业操作资格考试包括安全技术理论考试和实际操作考试两部分。考试不及格的，允许补考1次。经补考仍不及格的，重新参加相应的安全技术培训。  **第十四条** 考核发证机关委托承担特种作业操作资格考试的单位应当具备相应的场所、设施、设备等条件，建立相应的管理制度，并公布收费标准等信息。  **第十五条** 考核发证机关或其委托承担特种作业操作资格考试的单位，应当在考试结束后10个工作日内公布考试成绩。  **第十六条** 符合本规定第四条规定并经考试合格的特种作业人员，应当向其户籍所在地或者从业所在地的考核发证机关申请办理特种作业操作证，并提交身份证复印件、学历证书复印件、体检证明、考试合格证明等材料。  **第十七条** 收到申请的考核发证机关应当在5个工作日内完成对特种作业人员所提交申请材料的审查，作出受理或者不予受理的决定。能够当场作出受理决定的，应当当场作出受理决定；申请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要求的，应当当场或者在5个工作日内一次告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逾期不告知的，视为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即已被受理。  **第十八条** 对已经受理的申请，考核发证机关应当在20个工作日内完成审核工作。符合条件的，颁发特种作业操作证；不符合条件的，应当说明理由。  **第十九条** 特种作业操作证有效期为6年，在全国范围内有效。  特种作业操作证由安全监管总局统一式样、标准及编号。  **第二十条** 特种作业操作证遗失的，应当向原考核发证机关提出书面申请，经原考核发证机关审查同意后，予以补发。  特种作业操作证所记载的信息发生变化或者损毁的，应当向原考核发证机关提出书面申请，经原考核发证机关审查确认后，予以更换或者更新。  **第四章 复 审**  **第二十一条** 特种作业操作证每3年复审1次。  特种作业人员在特种作业操作证有效期内，连续从事本工种10年以上，严格遵守有关安全生产法律法规的，经原考核发证机关或者从业所在地考核发证机关同意，特种作业操作证的复审时间可以延长至每6年1次。  **第二十二条** 特种作业操作证需要复审的，应当在期满前60日内，由申请人或者申请人的用人单位向原考核发证机关或者从业所在地考核发证机关提出申请，并提交下列材料：  （一）社区或者县级以上医疗机构出具的健康证明；  （二）从事特种作业的情况；  （三）安全培训考试合格记录。  特种作业操作证有效期届满需要延期换证的，应当按照前款的规定申请延期复审。  **第二十三条** 特种作业操作证申请复审或者延期复审前，特种作业人员应当参加必要的安全培训并考试合格。  安全培训时间不少于8个学时，主要培训法律、法规、标准、事故案例和有关新工艺、新技术、新装备等知识。  **第二十四条** 申请复审的，考核发证机关应当在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完成复审工作。复审合格的，由考核发证机关签章、登记，予以确认；不合格的，说明理由。  申请延期复审的，经复审合格后，由考核发证机关重新颁发特种作业操作证。  **第二十五条** 特种作业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复审或者延期复审不予通过：  （一）健康体检不合格的；  （二）违章操作造成严重后果或者有2次以上违章行为，并经查证确实的；  （三）有安全生产违法行为，并给予行政处罚的；  （四）拒绝、阻碍安全生产监管监察部门监督检查的；  （五）未按规定参加安全培训，或者考试不合格的；  （六）具有本规定第三十条、第三十一条规定情形的。  **第二十六条** 特种作业操作证复审或者延期复审符合本规定第二十五条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五）项情形的，按照本规定经重新安全培训考试合格后，再办理复审或者延期复审手续。  再复审、延期复审仍不合格，或者未按期复审的，特种作业操作证失效。  **第二十七条** 申请人对复审或者延期复审有异议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五章 监督管理**  **第二十八条** 考核发证机关或其委托的单位及其工作人员应当忠于职守、坚持原则、廉洁自律，按照法律、法规、规章的规定进行特种作业人员的考核、发证、复审工作，接受社会的监督。  **第二十九条** 考核发证机关应当加强对特种作业人员的监督检查，发现其具有本规定第三十条规定情形的，及时撤销特种作业操作证；对依法应当给予行政处罚的安全生产违法行为，按照有关规定依法对生产经营单位及其特种作业人员实施行政处罚。  考核发证机关应当建立特种作业人员管理信息系统，方便用人单位和社会公众查询；对于注销特种作业操作证的特种作业人员，应当及时向社会公告。  **第三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考核发证机关应当撤销特种作业操作证：  （一）超过特种作业操作证有效期未延期复审的；  （二）特种作业人员的身体条件已不适合继续从事特种作业的；  （三）对发生生产安全事故负有责任的；  （四）特种作业操作证记载虚假信息的；  （五）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特种作业操作证的。  特种作业人员违反前款第（四）项、第（五）项规定的，3年内不得再次申请特种作业操作证。  **第三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考核发证机关应当注销特种作业操作证：  （一）特种作业人员死亡的；  （二）特种作业人员提出注销申请的；  （三）特种作业操作证被依法撤销的。  **第三十二条** 离开特种作业岗位6个月以上的特种作业人员，应当重新进行实际操作考试，经确认合格后方可上岗作业。  **第三十三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责煤矿特种作业人员考核发证工作的部门或者指定的机构应当每年分别向安全监管总局、煤矿安监局报告特种作业人员的考核发证情况。  **第三十四条** 培训机构应当按照有关规定组织实施特种作业人员的安全技术培训，不得向任何机构或者个人转借、出租安全生产培训资质证书。  **第三十五条** 生产经营单位应当加强对本单位特种作业人员的管理，建立健全特种作业人员培训、复审档案，做好申报、培训、考核、复审的组织工作和日常的检查工作。  **第三十六条** 特种作业人员在劳动合同期满后变动工作单位的，原工作单位不得以任何理由扣押其特种作业操作证。  跨省、自治区、直辖市从业的特种作业人员应当接受从业所在地考核发证机关的监督管理。  **第三十七条** 生产经营单位不得印制、伪造、倒卖特种作业操作证，或者使用非法印制、伪造、倒卖的特种作业操作证。  特种作业人员不得伪造、涂改、转借、转让、冒用特种作业操作证或者使用伪造的特种作业操作证。  **第六章 罚 则**  **第三十八条** 考核发证机关或其委托的单位及其工作人员在特种作业人员考核、发证和复审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三十九条** 生产经营单位未建立健全特种作业人员档案的，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下的罚款。  **第四十条** 生产经营单位使用未取得特种作业操作证的特种作业人员上岗作业的，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可以并处2万元以下的罚款。  煤矿企业使用未取得特种作业操作证的特种作业人员上岗作业的，依照《国务院关于预防煤矿生产安全事故的特别规定》的规定处罚。  **第四十一条** 生产经营单位非法印制、伪造、倒卖特种作业操作证，或者使用非法印制、伪造、倒卖的特种作业操作证的，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二条** 特种作业人员伪造、涂改特种作业操作证或者使用伪造的特种作业操作证的，给予警告，并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特种作业人员转借、转让、冒用特种作业操作证的，给予警告，并处2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  **第四十三条** 培训机构违反有关规定从事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的，按照有关规定依法给予行政处罚。  **第七章 附 则**  **第四十四条** 特种作业人员培训、考试的收费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会同负责煤矿特种作业人员考核发证工作的部门或者指定的机构统一制定，报同级人民政府物价、财政部门批准后执行，证书工本费由考核发证机关列入同级财政预算。  **第四十五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负责煤矿特种作业人员考核发证工作的部门或者指定的机构可以结合本地区实际，制定实施细则，报安全监管总局、煤矿安监局备案。  **第四十六条** 本规定自2010年7月1日起施行。1999年7月12日原国家经贸委发布的《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原国家经贸委令第13号）同时废止。  附件：特种作业目录（略） |